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과다 부과

소 관 기 관 구리시

조 치 기 관 구리시

내 용

1. 업무 개요

구리시는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¹¹⁷⁾(이하 “구리시 상수도 조례”라 한다)에 따라 수도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 시설¹¹⁸⁾의 신·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기준)

구리시 상수도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5조 제1항과 [별표 1] 제3호에 따르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도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대규모 시설¹¹⁹⁾에 대한 부담금은 ‘순자산/시설용량×부과대상사업의 수도물 사용량’으로 산정하도록

117)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르면 부담금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118) 「수도법」 제3조에 따르면 ‘수도시설’이란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取水)·저수(貯水)·도수(導水)·정수(淨水)·송수(送水)·배수시설(配水施設),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이라고 되어 있음

119) 구리시 상수도 조례 [별표 1] 제3호 다목에 따르면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담금은 계량기 구경별 금액을 부과

되어 있다.

한편, 구리시는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3·4단계(구리시에 배정된 시설용량 각 21,000m³, 24,000m³), 서울특별시 강북정수장(구리시에 배정된 시설용량 30,000m³), 관내 토평정수장(시설용량 30,000m³)으로부터 정수를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구리시가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3·4단계, 서울특별시 강북정수장, 토평정수장 등 구리시의 수도시설 관련 순자산 및 시설용량 모두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구리시는 2011. 3. 2. 부담금 산정기준 신설 시부터 순자산은 위 4군데 정수장으로부터 구리시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수도시설 등 관련 자산 모두를 합산하면서도 시설용량의 경우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구입하여 공급한다는 사유로 한국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3·4단계 및 서울특별시 강북정수장 등의 구리시 배정 시설용량(75,000m³)을 반영하지 않은 채 관내 토평정수장 시설용량만을 반영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고 있었다.

이에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2014년부터 2018년 2월까지 구리시가 부과한 부담금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11건에 대하여 정당 부과액 544,041,120원보다 1,360,102,800원만큼 과다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재산정 명세

(단위: 원)

연번	부과일	부과대상	실제 부과액(A)	정당 부과액(B)	과다 부과액(A-B)
1	2014. 7. 22.	-	192,670,820	55,048,806	137,622,014

연번	부과일	부과대상	실제 부과액(A)	정당 부과액(B)	과다 부과액(A-B)
2	2014. 9. 16.	-	21,086,540	6,024,726	15,061,814
3	2014. 9. 23.	-	70,070,370	20,020,106	50,050,264
4	2014. 11. 3.	-	459,969,230	131,419,780	328,549,450
5	2014. 12. 9.	-	170,872,100	48,820,600	122,051,500
6	2014. 12. 10.	-	124,025,430	35,435,837	88,589,593
7	2015. 11. 6.	-	17,396,010	4,970,288	12,425,722
8	2016. 12. 20.	-	315,894,170	90,255,477	225,638,693
9	2017. 3. 6.	-	363,796,270	103,941,791	259,854,479
10	2017. 4. 13.	-	84,120,080	24,034,309	60,085,771
11	2017. 12. 7.	-	84,242,900	24,069,400	60,173,500
계			1,904,143,920	544,041,120	1,360,102,800

자료: 구리시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구리시는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부담금 산정 시 구리시 수도시설 관련 시설용량 모두를 반영하여 계산하고 과다 부과·징수한 금액은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구리시장은 앞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할 때 구리시 수도시설의 시설용량 일부만을 반영하여 과다 부과·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과다 부과·징수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360,102,800원을 포함한 정당 환급액을 산정하여 「구리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